



자가소비를 위한 자가도축 허용지역 고시 Ⅱ

- 전북, 경기 이어 경남, 인천, 대구 고시 -

2002년 12월 31일부로 사슴을 포함한 8개 축종의 자가도축이 전면 금지 됐다.

현재 본회는 중탕가공용을 위해 도축하는 경우 농장에서 위생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만 갖추면 자가도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 건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자가도축의 유예기간이라도 연장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한편 본회는 법 개정시까지의 공백

기간에 단속을 당하는 농가가 발생치 않도록 지난해부터 각 도에 '자가소비를 위한 자가도축' 만이라도 가능토록 고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경기도는 올 초에 인구밀집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자가소비를 위한 자가도축 가능 지역으로 고시했다. 전라북도와 경기도 고시 지역은 지난호 회보에 게재된 바 있으며 이후 고시 지역인 경상남도, 인천시, 대구시 지역을 금번호에 게재한다. 타 도 및 광역시 역시 고시가 나는데로 매월 회보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경상남도】

경상남도 고시 제2002-350호

고 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1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 양, 사슴, 토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사육하는 메추리, 꿩에 대하여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허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경남도지사

- 자가도살 축종 : 사슴(일부지역은 미처 파악을 못 한곳도 있음)



구분 시군	조정		허용지역
	읍면동수	행정통리	
계	143	2,418	143(2,418)
창원시	0	0	허용지역없음
마산시	0	0	허용지역없음
진해시	0	0	허용지역없음
양산시	0	0	허용지역없음
합천군	0	0	허용지역없음
창녕군	0	0	허용지역없음
김해시	17	622	전 읍·면·동 지역
밀양시	11	265	전 읍·면 지역
남해군	10	220	전 읍·면 지역
산청군	11	284	전 읍·면 지역
합양군	11	252	전 읍·면 지역
사천시	1	5	동소동(신수도 26·27통, 능도, 마도, 저도)
통영시	7	26	산양읍(곤리, 추도리, 저림리, 연곡리), 용남면(지도리, 어의리), 도산면(오륜리), 광도면(인정리, 활리), 육지면(등항, 서산, ...) 한산면(..., 염호, 창좌, 하소, 추봉, 용호, 비진, 매죽), 사량면(금평, 둔지, 읍덕, 양지)
고성군	13	47	삼신면-두포리(포교, 와도, 덕산), 미룡리(대포), 삼봉리(하촌), 잔치리(장백), 거류면-화당리(화당), 갑서리(송의원)? 하일면-동화리(동화), 수양리(수양), 용태리(용태, 가동), 학림리(도송), 송천리(송천 1, 2구, 자란), 춘암리(용암포, 맥전포, ?, ?), 하이면-덩호리(부평), 월흥리(월흥), 석지리(신촌), 와룡리(와룡), 영오면-양산리(양월), 연당리(연촌), 대가면-갈천리(내갈, 종생), 양화리(양화), 금화리(세동, 월촌), 쭈정리(관동), 개천면-용안리(용안, 용궁), 봉치리(봉치), 나선리(나동), 좌연리(좌이), 영현면-봉발리(봉발 2구, 금능), 영부리(영동), 연화리(연화 2구), 회현면-봉동리(동촌), 어신리(석전, 산북, 어선), 구만면-주령리(주령), 화림리(선동), 저연리(저동), 용화리(와룡), 동해면-용정리(가룡), 외산리(좌부천), 내산리(내산, 전도), 장좌리(상장, 하장, 우두포, 구학포), 영현면-봉발리(봉발 2구, 금능), 영부리(영동), 연화리(연화 2구), 마암면-석마리(석마), 신리(신리), 보전리(전포, 보?)



합천군	17	174	합천읍(용계, 내곡, 외곡, 장계, 인곡), 봉산면(권빈 2, 노곡 1,2, 행정, 상현, 계산 2,3 고 삼), 묘산면(팔심, 나곡, ?), 가야면(치인 2, 죽전, 청현 1, 구원, 대전, 가천, 구미, 매안, 성기, 이천, 매화, 사촌), 야로면(청계 2, 나대, 둑촌 2, 덕암, 정대, 야로?), 율곡면(기리, 문림, 임북, 본천, 낙민, 두사, 갑산, 내천, 항곡, 제내, 율진, 와리, 노양), 초계면(신촌, 중리, 대동, 택리, 대평, 유하, 원당, ?), 쌍책면(? 하신, 사양, 견태, 덕봉, 진정, 상포, 다라), 덕곡면(율지, 개독, 학동, 포두, 북동, 남제, 병배, 장동, 상대, 본곡, 유흰), 청덕면(평촌, ?, 미곡, 삼학, 소례), 적중면(죽고, 부수, 옥두, 정토, 누하, 양립, 황정, 두방), 대양면(백암, 오산, 정양, 아천, 대목, 무곡, 양산, 도리, ?), 쌍백면(? 백역, 어파, 육리, 안계, 평지, 죽전, 하신, 운곡, 장전), 삼가면(내문, 지동, 상판, 복곡, 두모, 어전, 양전, 동리, 외토, 학리, 덕진), 가회면(? 목곡, 대기, 연동), 대병면(대지 2, 상천, 장단, 역평, 유전, 하금, 양리, 성리), 용주면(우곡, 팔산, 평산, 노리, 장전, 공암, 황계, 고품, ?, 월평)
진주시	10	30	내동면(신광), 진성면(진동, 가좌), 일반성면(소아, 원동) 이반성면(진안, 장안, 겁정, 송죽, 수성, 계룡, 밭산, 용암, 대동, 지...?), 지수면(?지, 안계, 용봉), 집현면(정평, 정수), 미천면(대곡, 기전, 효자, 정촌), 명석면(신촌, 덕곡, 동전, 오미), 대평면(신풍), 수곡면(....?)
의령군	8	17	의령읍(압곡, 서남), 가례면(개승, 가례, 평촌, 대천), 화정면(선곡, 덕교, 상정 1구), 용덕면(상교), 지정면(백산), 부림면(신반), 궁유면(대현, 석정), 유곡면(마장, 송산, 당동)
하동군	4	14	화개면(대성, 무춘, 신홍, 범왕, 단천, 의신), 금남면(대도), 청암면(북계, 담고, 원북계, 학동, 청학), 옥종면(궁항, 오?)
거제시	11	196	일운면(양화, 망치, 만양, 삼정, 수정, 와현, 예구, 선창, 교황, 회진, 대동, 공령, 소동, 신촌, 상촌, 하촌), 동부면(산촌, 산양, ?, 산거림, 오송, 동호, 영북, 영월, 가배, 합박금, 율포, 학동, 수산), 남부면(탑포, 쌍근, 저구, 명사, 근포, 대포, 흥포, 다포, 여차, 다대, 해금?, ?), 거제면(서정, 서원, 동림, 화원, 기목정, 옥산, 외간, 내간, 송곡, 소량, 고당, 법동포, 산달전등, 산달정후, 실리, 오수, 선창, 죽림, 명진, 남정), 둔덕면(거림, 농막, 산방, 방하, 죽전, 하둔, 방답, 어구, 각산, 호곡, 슬역, 내평, 화도, 학산, 아사), 사등면(두동, 사곡, 성내, 언양, 대리, 금포, ?, 광리, 신촌, 견내량, 장외, 군사령, 신전, 찬촌, 계도, 실전, 유교, 신교), 연초면(내간, 내곡, 오비, 중촌, 소오비, 연사, 연중, 연행, 효촌, ?, 덕치, 명하, 명상, 천곡, 효촌, 하송, 상송, 봉송, 이복, 이남), 하청면(석포, 덕곡, 해안, 서항, 서대, 서상, 동리, 서리, 중리, 신동, ?, 물안, 대곡, 장안, 송포, 황덕, 연구, 곡촌, 금곡, 옥계), 장북면(장동, 장북, 장서, 매동, 관포, 두모, 송진, 신촌, 궁농, 간곡, 임호, 농?, ?, 금, 복령, 이목, 시방, 흥남, 서목, 외포, 상포, 소계, 대계), 아주동(내곡, 탑곡), 옥포동(상덕, 하덕)

※ ?는 리명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일부 누락된 곳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2-205호

고 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슴, 토끼,



닭, 오리, 칠면조, 메추리, 거위, 꿩)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목적: 소·말을 제외한 가축(8종)을 자가소비시 허가 받은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벽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2. 지정기간: 2003년 1월 1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3. 지정지역 및 대상가축

구·군별	읍·면별	대상가축	비고
계	9개소	8종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사슴, 토끼, 닭, 오리, 칠면조, 메추리, 거위, 꿩	

부칙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3-18

고 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소비용 가축도살허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축종: 돼지(사육하는 뗏돼지 포함), 양(산양 포함),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 사육하는 메추리, 꿩, 사슴
2. 자가소비용 도살허용지역 지정

축 종	도살허용 고시지역
	개정고시
사슴	강화군 교동면 전지역 강화군 삼산면 전지역 강화군 서도면 전지역 용진군 북도면 전지역 용진군 연평면 전지역 용진군 대청면 전지역 용진군 덕적면 전지역 용진군 자월면 전지역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